#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50

발의연월일: 2022. 9. 26.

발 의 자:김영식·김석기·김승수

김용판 · 김정재 · 김태호

박대수 · 박성중 · 지성호

태영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.

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의 경우 방송통신설비, 인터넷설비,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,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부터 안 제37조의4까지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"시공"을 "시공 및 유지보수 등"으로 한다.

제3장제3절의 제목 중 "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(使用前檢査)"를 "시공관리・사용전검사(使用前檢査) 및 유지보수 등"으로 한다.

제3장제3절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7조의2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기준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건축물·시설물 등(이하 "건축물등"이라 한다)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 및 점검(이하 "유지보수등"이라 한 다)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(이하 "유지보수·관리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·관리기준의 내용, 방법, 절차 등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7조의3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관리주체")는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·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 필요한 성능을 점검(이하 "성능점검"이라 한다)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37조의4(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등) ① 관리주체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 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④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3항에

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자격기준, 선임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8조제1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의2.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- 6의3.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작성한 자
- 6의4.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- 6의5.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- 1의2.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 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1의3.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

고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)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고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장 공사의 <u>시공</u>	제3장 공사의 <u>시공 및 유지보수</u>
	<u> </u>
제3절 공사의 <u>시공관리 및 사용</u>	제3절 공사의 <u>시공관리·사용전</u>
전검사(使用前檢査)	검사(使用前檢査) 및 유지보수 등
<u> &lt;신 설&gt;</u>	제37조의2(정보통신설비의 유지
	보수·관리기준 등) ① 과학기
	<u>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·</u>
	시설물 등(이하 "건축물등"이라
	한다)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
	의 유지보수·관리 및 점검(이
	하 "유지보수등"이라 한다)을
	위하여 필요한 기준(이하 "유
	지보수·관리기준"이라 한다)
	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・관
	리기준의 내용, 방법, 절차 등
	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
	<u>정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37조의3(정보통신설비의 유지
	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
	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
	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

또는 관리자(이하 "관리주체") 는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-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·관리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 필요한 성능을 점 검(이하 "성능점검"이라 한다) 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 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 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 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7조의4(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・관리자 선임 등) ① 관리주체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

<신 설>

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

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・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 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 수・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.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 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 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제7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78조(과태료) ① -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6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발급하여야 한다.

-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자의 해임신고 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 보수 ·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 야 한다.
-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 리자의 자격기준, 선임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6의2.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 · 관리기준을 준수하 지 아니한 자
- 6의3.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
- 6의4.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
6의5.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

7. ~ 9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2. (생략)

③ (생략)

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・
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7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 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 •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 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 니한 자

1의3.제37조의4제3항에 따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